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(조정금의 지급·징수 또는 공탁)에 따라 향양·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른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8일

파 주 시



1. 공고대상 : 서0국 등 2명 (붙임 참조)
2. 공고기간 : 2026. 7. 28. ~ 2026. 8. 11. (14일간)
3. 공고장소 : 파주시청 홈페이지
4. 공고내용 : 향양·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처리결과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
5. 기타사항
 - 가.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
 - 나.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(031-940-498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. 끝.